

# 統監府時代의 大韓帝國統治體制의 構造와 機能

金雲泰  
院長·教授

## 目 次

- 第一節 日本統監府의 組織과 機能
- 第二節 統監府時代의 一般 統治組織의 變遷過程
- 第三節 裁判所 構成
- 第四節 宮內組織

本稿에서는 1904 年 國權의 侵奪로부터 1910 年 合併에 이르기까지의 大韓帝國統治體制의 變革過程을 살펴보기로 한다.

## 第一節 日本統監府의 組織과 機能

日本과 帝政「리시아」의 帝國主義的 植民地擴張政策이 우리나라를 對象으로 尖銳하게 對立되자 日本은 英日同盟의 締結(1902年)과 美國의 支持를 背景으로 삼아 戰爭解決을 決定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植民地化方針을 굳혔으며 1903年 12月 30日에 日本閣議는 武斷的인 對韓方針을 決議하고 그着手時期를 노렸던 것이었다.<sup>(1)</sup>

日本은 1904年으로 접어들면서 「리시아」에게 戰爭을 挑發하여 그 劢力を 서울政界에서 一掃하자 드디어 2月 23日에는 施政改善에 關하여 干涉하는 內容으로 된 우리나라 主權을 크게 制限하는 「韓日議定書」를 強要하였으며 또한 戰況이 그들에게 有利하게 展開되자 同年 8月 22日에는 「韓日外國人顧問備聘에 關한 協定書」를 締結하였다.

同協定書는 日本政府가 주친하는 日人 또는 外國人 一名씩을 우리政府의 財政 및 外交顧問으로 각기 備聘하여 關係事項은 一切 그 意見을 들어 施行하여야 한다는 內容으로서<sup>(2)</sup> 日

(1) 韓國獨立運動史一, 國史編纂委員 p.22 第一節 韓日議定書, 中立宣言

(2) 日本外交文書 第37卷 第1冊 pp.350~381 事項六「日韓協約 締結의 件」

本協定으로 大藏省主稅局長 日賀田種太郎을 財政顧問에 또한 美人「스티븐스」를 外交顧問에 就任하였다.

本은 이 두 顧問의 傭聘強制를 前後하여 何等 條約의 根據도 없이 自進招請한다는 形式을 떨려서 各部에도 모두 이와 大同小異한 顧問을 차례로 두게 하여 所謂 顧問政治體制를 確立한 바 있다. 이로서 軍部顧問은 우리나라 軍隊를 解散시키는 作業을, 또 內部의 警務顧問은 우리나라 警察을 料理하는 일을 그리고 宮內部顧問은 宮內部를 監督하는 일을 또한 學部參與官은 植民地教育體制를 掌하는 作業등을 각己 擔任케 함으로써 植民地化 方案을 共同으로 推進한 것이며 특히 이들 各 顧問밑에는 補助官이란 名目으로 10名乃至 100餘名의 日人을 두어 內政干渉을 積極化하였다. <sup>(3)</sup>

다시 日本은 露日戰의 勝勢에 便乘하여 우리나라를 保護國化하는 條約을 強行하고자 關係列強의 諒解를 받는 등 綿密한 計劃下에 事前工作을 하였으며 마침내 1905年 11月 9日에 서울에서 大韓帝國의 外交接受를 主旨로하는 所謂 乙巳保護條約이 強要되었다. 同條約으로 韓國에 대한 日帝의 保護權이 確立된 것이며 특히 第3條는 統監府의 設置를 規定한 것인바 即「日本政府는 其代表者로서 韓國皇帝陛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Resident General)을 置하되 統監은 之로서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기 위하여 京城에 駐在하여 親히 韓國皇帝陛下에게 內謁權의 權利를 有함. 日本國政府는 또한 韓國의 各開港場 及 其他 日本國政府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地域에 理事官(Resident)을 置할 權利를 有함. 理事官은 統監指揮下에 從來在韓國日本領事에게 屬하였던 一切의 職權을 執行하고 아울러 本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一切의 事務를 掌理함」<sup>(4)</sup>이라는 規定에 의하여 日本政府는 同年 12月 20일에 「統監府及 理事廳官制」를 公布하고翌 21일에는 「韓國侵略의 元兇이며 機密院議長인 伊藤博文이 初代統監으로 任命되고 1906年 1月 31日字로 駐韓 日本公使館이 閉鎖됨으로서 大韓帝國에 대한 日本의 統監統治가 開始되게 되었다.

「統監府 및 理事廳官制」의 概要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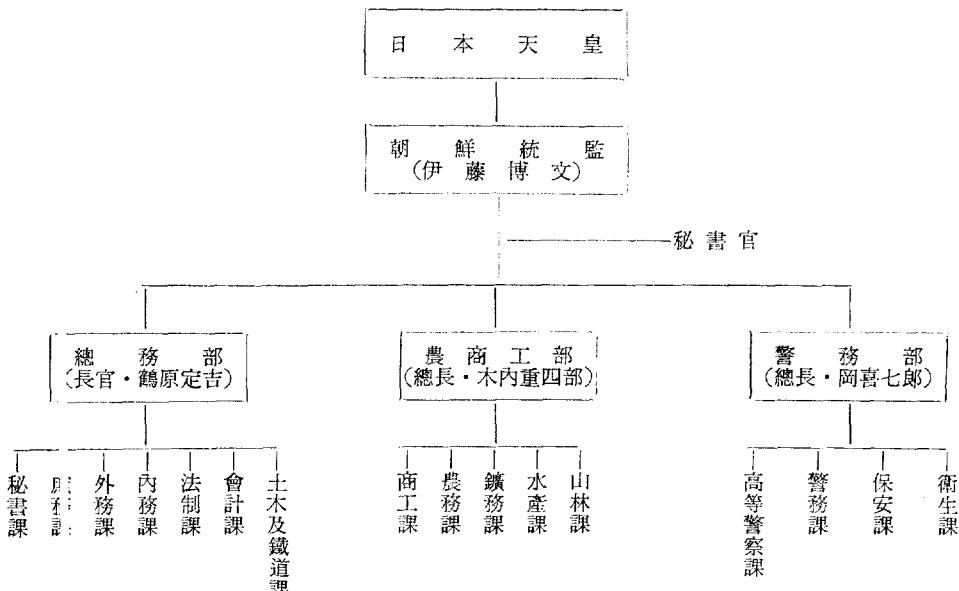
韓國「서울」에 統監府를 두고 統監府에 統監(親任官)을 두며 統監은 天皇의 直隸하여 外交에 關하는 外務大臣을 經由한후 内閣總理大臣을 經由하고 其他 事務에 關하여는 内閣總理大臣을 通하여 上奏하고 裁可를 받는다. 統監은 韓國에 있어서 日本政府를 代表하고 韓國에 있어서 外國領事館 및 外國人에 關한 事務를 統轄하며 韓國의 安寧秩序를 保持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韓國守備軍의 司令官에 대하여 兵力使用을 命하고 또한 日本官吏其他의 者로서 韓國政府에 傭聘된 者를 監督하고 나아가서는 所轄官廳의 命令 또는 處分이 條約 또는 法令에 違背되어 公益을 害하거나 또는 權限을 犯하였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의 命令 또는 處分을 停止 또는 取消할 수 있는 등 同 統監은 韓國에 있어 日本政府를 代表하여 大韓帝國의 外交, 行政, 軍事등 施政一般에 관한 廣範한 權限을 保有한 것이다.

(3) 日館記錄「1905年 稚外國人」p.56.

(4) 金正明編, 日本外交資料集成, 6(中) 東京, 巖岩堂書店, 1964, 文書番號, 「韓國保護權確立 1件」

한국 내에 必要한 곳에 理事廳을 두고 理事官은 統監의 指揮監督을 받아 從來 韓國在勤領事에 屬하였던 事務와 條約 및 法令에 基하여 理事官이 執行하여야 할 事務를 관掌하였으며 安寧秩序를 保持하거나 또는 韓國의 施政事務를 執行하는데 緊急必要가 있는 경우에는當該地方 軍隊나 官憲에게 緊急指示를 내릴 수 있었다.<sup>(5)</sup>

前記 官制에 따른 統監府의 内部組織과 初代의 人事充員은 다음과 같다.<sup>(6)</sup>



※ 韓國駐劄日軍司令官 長谷川好道

※ 1907年 3月에 外部가 追加됨.(外務總長・鍋島桂次郎)

그리고 統監府 밑에는 1906年 1月 19日字 統監府令 第6號로 釜山, 馬山, 群山, 木浦, 京城, 仁川, 平壤, 鎮南浦, 元山及 城津 등 10個所에 理事廳을 두었으며 (後에 13個所로 增加) 同年 11月에는 水原, 海州, 公州, 全州, 光州, 晋州, 咸興及 鏡城 8個所에 支廳을 두었다. (後에 11個所로 增加)

이와 같은 日帝의 侵略過程은 우리 거래의 民族的 抗拒에 직면하자 더욱 深化되어 갔다. 특히 1907年 6月에 「홀랜드」의 「해구」에서 開設된 第二回 萬國平和會議에의 密使派遣事件을 계기로 하여 丁未七條約(1907年 7月 20日 統監伊藤博文과 大韓國內閣總理大臣 李完用 사이에 調印됨)이 強要되었는데 이 新條約에 의하여 統監은 韓國政府의 施政改善을 指導하는 위치에 서서 法令의 制定 及 重要한 行政上の 處分등을 一切 統監의 承認을 받도록 함으로써

(5) 之正明編, 前揭書文書番號 54, 統監府及理事官制

(6) 朝鮮政府總務局官報課, 官報 光武 9年 12月 21日字 號外

立法, 司法, 行政, 全般에 걸친 統治權을 專斷할 수 있게 되었으며 其執行機關으로는 앞서의 顧問制度를 廢止하고 韓國政府의 重要한 官職에 日本人을 任用하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sup>(7)</sup> 또한 이 新條約 實行을 위해서 새로운 覺書가 交換되어<sup>(8)</sup> 裁判, 監獄, 徵兵制 등을 改正함으로서 植民政治화를 着着 準備한 것이다.

그리고 前記한 新條約의 形式上 文脈으로는 統監은 自己의 추첨하는 日本人을 韓國國務大臣에 任命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同條約에 附帶한 施行細目規定으로 當分間 日本人官吏任命의 範圍를 行部次官 以下の 重要官職에 限定케 하고 國務大臣은 永遠히 韓人을 登用하게 한 것이다. 이는 虛名보다도 實利를 쫓고자 한 伊藤公의 奸智한人事政策의 所致라 하겠으며 韓人大臣의 밑에 있는 日本人 次官으로 하여금 實權을 掌握케 한 것으로 이른바 次官政治의 具現이라 하겠다.

뒤이어 1907年 8月에는 統監의 職權을 擴張하여 統監은 韓國에서 帝國政府를 代表하여 條約及法令에 의거하여 諸般政務을 統轄할 수 있게 統監府組織을 改正하였고 同年 12月에는 各部의 官制를 改正하여 局課를 廢合하고 事務의 簡素化와 統一을 期하는 동시에 속속히 日本人을 韓國政府要職에 任用함으로서 各官廳의 어느곳을 莫論하고 日本人官吏가 없는곳이 없게 이르렀으며 1909年 1月 現在 韓國政府에 任用된 日人官吏數는 高等官 466名 判任官 1,614名 計 2,080名과 日人巡査 1,548名에 이르렀다.<sup>(9)</sup>

統監府가 設置되면서부터 諸般 政策形式은 그 政策이 大韓帝國政府에 의하여 發議된 것이 전 또는 統監府에 의하여 發案된 것이전 間에 모두가 統監의 承認을 得한 후에 形式上으로 大韓帝國 皇帝의 裁可를 얻는 節次를 取했으며 이의 執行은 그의 指揮下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統監府는 1906年부터 統監과 大韓帝國政府大臣 등으로構成된 「韓國施政改善에 關한 協議會」를 開催하여 統監府와 韓國政府間의 意見을 調整하였는데 同協議會는 實質적으로는 統監의 1個 調問機關에 不過한 것으로 1906年 3月 13日부터 1909年 12月 28日까지 97回

(7) 海牙密使事件이 있은 以後 日本은 다음과 같은 丁未 七條約을 強要하여 全般的인 統治權에 干涉하였다.

第一條 韓國政府는 施政改善에 關하여 統監의 指導를 受할 事

第一條 韓國政府의 法令의 制定及 重要한 行政上의 處分은豫하 統監의 承認을 經할 事

第三條 韓國의 司法事務는 普通行政事務와 此를 區別할 事

第四條 韓國高等官吏의 任免은 統監의 同意로서 此를 行할 事

第五條 韓國政府는 統監이 推薦한 日本人을 韓國官吏에 任命할 事

第六條 韓國政府는 統監의 同意없이 外國人을 僱聘치 아니할 事

第七條 明治 37年 8月 22日 調印한 日韓協約 第1項을 廢止할 事(備考 同第一項은 「韓國政府는 日本政府의 推薦하는 日本人一名을 財政顧問으로 韓國政府에 僱聘하여 財務에 關하는 事項은 總히 其意見을 諮하야 施行할 事」라 하였음)

(8) ①韓日兩國人으로 組織하는 裁判所를 設置한 것.

②監獄制度의 改正

③徵兵法을 實施하고 軍備를 整理할 것

④日本人을 韓國官吏에 任用할 것

(9) 朝鮮併合十年史, 大東出版協會 p.144.

에 걸쳐 開催된 바 있었다.

## 第二節 統監府時代의 統治組織의 變革過程

統監府時代에 있어서는 甲午·乙未兩改革을 통하여 이루워진 朝鮮王朝傳來의 統治組織을 다시 크게 手術을 加하여 整備한 것이며 大體로 大韓帝國의 外交 軍事 司法權等이 日本에 接受된 關係로 部分的 墓止가 있었지만 政府組織의 權能的 專門化를 폐했기 때문에 機構面에 많은 擴張을 본 것이다.

여기서 1905年 11月 17日에 韓日間에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기 約 9個月前인 1905年 2月에 離布된 官制에 따른 1905年初의 大韓帝國의 統治構造와 그리고 1907年에 改定된 官制를 中心으로 變革過程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 圖表 I (1905年初 中央統治組織)과 圖表 2(1907年 12月의 中央各部組織)参考<sup>(10)</sup>

1. 中樞院…中樞院은 皇帝를 보필하는 最高諮詢 權關으로서 議長 1人(親任), 副議長 1人(勅任), 賛議 8人(勅任), 副贊議 15人(奏任), 參事官 또는 書記官 3人(奏任), 主事 4人(判任)으로 構成되며 漢城에 2人, 各道에 각 1人을 才識있고 民望있는 者로 選任하되 우선 그 審查 議定事項으로 (i) 議政府로부터 諮詢하는 軍國主要事項과 法律勅令의 制定 및 改廢에 關한 事項 (ii) 法律勅令의 實行效果와 其未備事項에 대한 建議事項. 이중 副贊議는 漢城府尹 및 行道觀察使가 2人 혹은 3人을 추첨하면 議政大臣이 議長 副議長과 協商한 후에 침기 상주하여 裁可를 얻는다. 또한

(iii) 法律勅令實施에 關한 建議事項 그리고 특히

(iv) 人民獻議에 關한 事項 등을 審查 議決한다.<sup>(11)</sup>

中樞院의 運營方法을 살펴 보면 議長과 賛議가 前記한 議定事項에 대하여 可否議決한 후 이를 議政府에 조회 또는 說明하여 만일 議政府와 中樞院이 意見의 合致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國務大臣이 中樞院에 參席하여 (部下官吏를 代理參席시킬 수 있음) 議案越旨를 辨明하도록 하였다. 또한 中樞院에 顧問 6人을 두되 一年以上 政府大臣의 親任職을 經한 者 중에서任命하고 他官職을 兼할 수 있게 하였으며 議政府로부터 諮詢한 軍國重要事項은 議長이 顧問을 會同시켜 收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밖 中樞院會議는 議員 3分의 2以上이 出席치 않으면 開會할 수 없었다. 이와같이 中樞院의 組織과<sup>(12)</sup> 機能은 王朝末葉의 獨立協會運動의 一環으로 생긴 中樞院 即 立憲制君主體制下에서의 議院內閣制의 國會의 組織을 모방한 것을 變革하여 담습한 것으로 어느

(10) 1905年 2月 26日字 各部官制 및 同年 3月 4日字 宮內府官制 參考

(11) 『提摘要 光武 9年 11月調 pp. 244~246.

王行韓國法典 全度支部大臣官房編纂 pp. 113~120. (光武 9年 3月 1日字 勅令 第12號 中樞院官制

(12) 指著 朝鮮王朝行政史—近代篇—pp. 278~280 一潮閣 1970.

程度의 民主的 要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sup>(13)</sup>

2. 議政府<sup>2</sup> 内閣…初期의 議政府는 議政大臣一人 參政大臣 一人 外部, 内部, 度支部, 軍部, 法部, 學部 및 農商工部大臣各一人 등으로 構成되어 이들 國務大臣은 皇帝를 轉彌하여 邦國을 經理할 責任을 지며 모든 法律勅令은 議政大臣及 主務大臣이 副署를 하고 辅政大臣은 各大臣의 首班으로서 有故한 때는 參政大臣이 그 事務를 代行하고 議政大臣과 參政大臣이 共司 有故할 時에는 各部大臣 中에서 勅命을 받은 大臣이 臨時署理 한다. 그리고 議政府에서 經議하는 軍國重要事項과 法律勅令 制定廢止 또는 改正에 關한 事項은 中樞院에 諮詢하여 協議를 거친 후에 上奏하여야 한다. 議政府會議의 經議事項으로는

- (i) 法律勅令案制定廢止 或은 改正
- (ii) 歲入歲出 豐算及 決算
- (iii) 内外國賓
- (iv) 國際條約及 重要한 國際條件
- (v) 奏任官任命及 進退(但 武官及司法卒業人 除外)
- (vi) 各官廳發置分合과 整理改革
- (vii) 各部間主管權限의 爭議
- (viii) 官吏의 上疏或은 書奏의 禀處批旨의 承認
- (ix) 豐算外支出
- (x) 租稅의 新設 變更存廢 並 官有地森林 屋宇船舶漁業等 管理處分 及 電線鐵路 礦業等 開發
- (xi) 特旨로 會議에 下付하는 事項
- (xii) 内地有事時의 按撫等 特別方法에 關한 事項 등이며

議政府 所屬職員으로는 參贊 1人, 參書官 4人, 및 主事 14人이 充員되었다.<sup>(14)</sup>

参考로 1904年 2月 26日(光武 9年) 現在 閣僚名單을 보면 議政臨時署理 内部大臣 趙秉式, 外部大臣 李夏榮, 度支部大臣 閔泳綺, 軍部大臣 權重顯, 法務大臣 朴齊純, 學部大臣 李載克, 農商工部大臣 李址鎔 등이다.

그리나 1907年 6月(光武 11年 6月 21日)의 内閣官制(勅令 第35號)로 從前의 議政府는 内閣으로 議政府大臣은 内閣總理大臣으로 改定되었다. 改定된 内閣官制의 주요 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5)</sup>

1. 國務大臣(内閣總理大臣 及 行政各部大臣)은 皇帝를 輔弼하고 國政을 處理할 責任을 지며 法律勅令은 모두 内閣總理大臣及 關係大臣이 副署한다.

(13) 現行韓國法典 前揭書 pp. 116~120. 中樞院 議事規則 光武4年 8月 6日 議政府令 第1號

(14) 現行大韓法規類纂 pp. 13~16. 議政府官制勅令 第8號, 政府財政顧問部 編纂光武 11年

(15) 現行韓國法典 前揭書 pp. 106~109.

2. 内閣會議를 거쳐야 할 사항은 (i) 法律案, 勅令案, (ii) 豫算案, 決算案 (iii) 豫算外支出 (iv) 各部間主管權限의 爭議 (v) 文武勅任官責任官의 任命進退 (vi) 教品及 教勳 (vii) 大赦及特赦 등이다.

그밖에 内閣總理大臣은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나 内閣會議를 召集할 수 있었으며 閣議는 秘密히 치�였고 各大臣 3分之2 以上이 合席치 않으면 開會할 수 없었다. 또한 閣議의 議決은 多數可決制에 따랐으며 可否同數인 경우에는 内閣總理大臣이 決定했다. (内閣會議規程 勅令 37號)

한편 内閣所屬으로 總理大臣官房(秘書課), 書記官室(文書課, 會計課) 法制局(法制課, 記錄課, 官報課), 外事局(外事課, 翻譯課) 등이 있었다.

3. 表彰院은 議政府에 屬하며 總裁 1人(勅任), 參事官 또는 書記官 1人(奏任官), 技師 1~3人(奏任), 主事 2人(判任), 技手 4人(判任)으로 構成되며 그 所管事項은

- (i) 勳位勳等及年金
- (ii) 勳章記章 褒章 及 其他賞與
- (iii) 外國勳章記章受領及 佩用
- (iv) 勳章製造 등으로 되어 있다.

總裁는 院中事務를 管理하고 賞勳會議의 議長이 되며 議定官(名譽職)은 皇族과 前任 또는 現職 文武官勳三等以上의 者 중에서 勅令으로 任命하되 定員 15人 以下로서 賞勳會議를 構成한다. (光武 9年 3月 勅令 第11號)

4. 法事調査局—法典調查局(隆熙元年 1907年 12月 23日 勅令 第60號)은 内閣總理大臣의 監督下에 有民法, 刑法, 民事訴訟法 및 附屬法令의 起案을 담당하며 그 職制(1910年 勅令 9號 改定)는 委員長 一人(勅任官待遇) 委員 若干人(勅任或은 奏任 官待遇) 書記官 專任 一人(奏任) 事務官 專任 三人(奏任) 事務官補 專任 8人(判任) 翻譯官補 專任 8人(判任) 등을 두고 且고 별도로 顧問을 둘 수 있었다.<sup>(16)</sup>

이 法事調査局은 오늘날의 法制機構의 始初라 하겠다.

5. 文官銓考所—議政府(内閣)에 文官銓考所(光武 9年 2月 26日 勅令 第10號)을 두고 委員長 1人과 委員 6人을 두어 各 官廳 高等官中으로 議政大臣(内閣總理大臣)이 選任한다. 文官銓考所 委員長은 議政大臣(内閣總理大臣)의 監督에 屬하여 判任文官 普通試驗科目에 關한 事務를 광장하고 文官普通 試驗科目은 委員長及 委員이 議定한 후 議政大臣(内閣總理大臣)의 認可를 받어 施行한다.<sup>(17)</sup>

부이어 1908年 10月 5일에는 文官 銓衡委員制(閣令 10號)가 發布 施行되었는데 이에 의

(16) 現行韓國法典 前揭書 pp109~112.

(17) 法事類編—pp. 110~111 内閣記錄課隆熙二年四月 日發行

하면 銓衡委員을 高等銓衡委員과 普通銓衡委員으로 區分하여 前者は 内閣에 그리고 後者は 内閣及 各部에 두고 또 高等銓衡委員은 委員長 1人 委員 若干人으로 組織하여 勅奏任文官에 關한 銓衡事務를 관장하고 普通銓衡委員은 委員長 1人 委員 若干人으로서 組織하여 判任文官及 判任官待遇者에 關한 銓衡事務를 관장하였다. 그리고 銓衡委員은 必要한 경우 筆記 또는 口述試驗을 課할수 있었다. <sup>(18)</sup>

무릇 上記 文官銓衡考所는 文官公開普通試驗을 管理하는 合議制人事機構의 始初라하겠고 또 文官銓衡委員制는 近代的인 資格任用制로 發展하는 過渡期의인 制度로서 意義가 있는 것 이었다.

다음 行政・各部官制 및 各部署編制를 보면 1905年 初에는 外部, 内部, 度支部, 軍部, 法部, 學部, 農商工部 등 7個部로 構成되었으나(勅令 第13號) 1917年 12月 13日 勅令 第36號로 外部가 廢止되고 이어 1909年에는 法部와 軍部가 解體되었다.

各部大臣은

所管事務에 關해서 法律勅令의 制定, 廢止及 改正을 要하는 事項에 關한 案을 具하여 内閣에 提議할 수 있고 또한 所管事務에 關해서 法律勅令의 範圍內에서 部令을 發할 수가 있 었다.

1907年 「各部官制通則改正에 關한 件」에 의하면 <sup>(19)</sup>

各部大臣의 共通된 職務權限은

- 가) 主任事務에 對하여 責任을 지고 主任所管이 不分明한 事務로서 兩部 以上에 關聯되는 경우에는 内閣에 提出하여 그 主任을 定하며
- 나)主任 事務에 對하여 法律勅令의 制定, 廢止及 改正을 要할 時는 案를 具하여 内閣에 提出하고
- 다)主任 事務에 對하여 法律勅令의 範圍內에서 部令을 發할 수 있고
- 라)主任 事務에 對하여 그 職權의 範圍內에서 警視總監及 地方長官을 監督함.
- 마)警視總監及 地方長官에 命令 또는 處分이 成規에 違하여 公益을 害하거나 權限을侵犯한 者가 有하다고 認定할 때는 그 命令 또는 處分을 停止하거나 取消할 수 있 었으며
- 바) 所屬官吏를 統督하며 奏任官의 進退는 内閣總理大臣을 經하여 上奏하고 判任官이 下는 專行할 수 있었다.

다음 各部 | 共通된 組織으로는

- 가) 各部에 大臣官房을 두어 다음 事項을 掌하였다.

(18) 法規續篇上 pp. 16~17

(19) 承政院日記 1907年 12月 13日條 國史編纂委員會編 各部官制通則改正에 關한 件

.. 機密에 關한 事項

1. 官吏進退身分에 關한 事項

.. 大臣官印及部印의 管守에 關한 事項

.. 文書接受發送翻譯編纂及保存에 關한 事項

.. 統計及 報告에 關한 事項

1 所管經費及諸收入의 豐算決算 및 會計에 關한 事項

2. 會計監查에 關한 事項

1. 所管官有財產及 物品에 關한 事項

.. 其他 各部官制에서 大臣官房에 屬하게 한 事項 등이며

나) 各部에 局을 두어 그 分掌事務는 各部官制에서 定하며 大臣官房과 各局은 各部大臣

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分課하며 그 所管事務를 定하고

다) 各部에는 大臣外에 下記職員을 두었다.

次官(協辦) 1人 勅任

局長 各局 1人 一等局長은 勅任 或 二·三等局長은 奏任

秘書官專任 1人 奏任

書記官(參書官) 奏任

事務官 奏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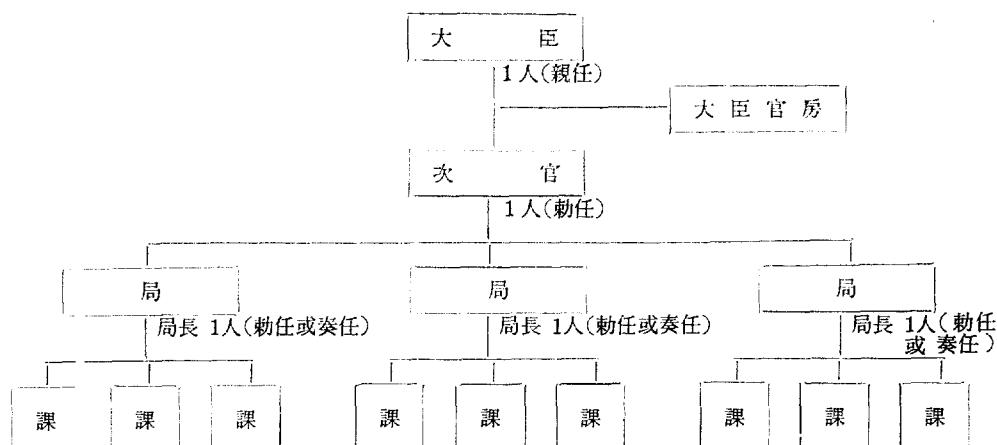
(各課의) 課長各一人은 奏任官 또는 判任官으로 充員했다

翻譯官 奏任

事 判任

但 軍部에는 書記官及 事務官을 置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各部의 共通組織은 다음과 같이 圖式化 할 수 있다.



外部에는 交涉局과 通商局이 있어 각기 涉外와 通商航海事務를 관掌하였으나 1906年에  
곧廢止되었고

(1) 内部大臣은 地方行政과 警察, 土木, 陸上輸送, 電氣, 衛生, 地理, 宗教, 出版, 戶籍,  
移民及 救恤의 關한 事務를 管理하고 警視總監及 地方長官을 監督하였다.

우선 内部이 는 内局으로 本來 地方局, 警務局, 會計局의 三局이 있었으나 隆熙元年에 改定  
되어 地方局, 警務局, 土木局, 衛生局 등 四局을 두었다. 地方局에서는 地方行政, 救恤及  
慈善事業, 天災及徵發, 地理及地繪, 宗教及祠社寺 등에 關한 事項 警務局에서는 行政警  
察(高等警察(思想取締) 圖書出版及著作, 戶口及民籍 그리고 移民 등에 關한 事項을 土木局  
에서는 本部直轄土木工事, 地方土木工事, 道路, 上水(飲料水) 下水(溝渠), 河川, 港灣, 砂  
防, 及 灌溉事業 水面埋築使用, 土地收用, 鐵道軌道及電氣 등에 關한 事項을 그리고 衛生局  
은 傳染病, 預防種痘, 其他公衆衛生, 醫師, 藥劑師 事務 및 藥品賣藥의 監察, 病院及 衛生  
會, 衛生上의 試驗及 痘菌의 製造 등에 關한 事務를 各已 管掌하였다.

다음 内部 管轄의 主要外廳으로서 처음 警務廳(1906年 4月 勅令 第8號)은 곧 警視廳  
(1907年 12月 勅令 第39號)으로 改定되어 警察制度가 整備되었는데 警視廳에 警視總監(初期  
1906年에 警務使) 一人 勅任 警視副監一人(勅任 或은 奏任) 警視 專任 12人 奏任 緒譯  
官二人 奏任 警察醫 專任 二人 奏任或判任 警部 專任 61人 判任 緒譯官補 四人 判任 등을  
두고 나아가서는 巡查(判任官 待遇)를 두었으며 警視總監은 内部大臣의 指揮監督를 받어 皇宮  
漢城府에 둔 警察 消防及 衛生事務를 掌理하고 各部主務에 關한 警察事務에 對하여는  
各部大臣의 指揮監督를 받았다.

또한 漢城府內(1908년까지는 京畿道내로 함)에 警察署及 警察分署를 두되 其位置及 管轄  
區域은 内務大臣이 定했으며 警察署長은 警視 그리고 警察分署長은 警部로서 充員하였으며  
東署西署 南署 北署 中署와 西署에 西湖分署와 麻湖分署, 南署에 漢湖分署를 두었다.<sup>(20)</sup>

한편 漢城內에 監獄署를 두어 監獄署長이 警視總監及 檢事의 命을 받아 在監人에 關한 事  
務를 管掌케 했다.

1907年 12月의 官制改革에서는 특히 地方官官制의 改革이 重點으로 斷行되었다. 其中  
徵稅法의 改正, 新裁判所의 設置 및 警察制度의 改正 등으로 從來 郡守의 權限에 屬했던 徵  
稅司法 警察에 關한 職權이 縮少된 關係로 純然히 行政官의 地位로 低落되었으며 觀察使府  
에는 日本人書記官 및 警視, 警部 등을 配置함으로서 이들이 往年과 같은 收斂暴虐  
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많은 觀察使와 郡守中에는 이와같은 改革에 여러가지 理由에서 不快感을 갖고 協  
調하지 않는 調도 있었을 뿐더러 抗日義兵運動이 各地에서 展開되었기 때문에 地方行政의

(20) 法規類編 一一前揭書 pp. 153~180.

紊亂을 防지 못했다. 마침내 1908年 6月에 農商工部大臣 宋秉畯이 새로이 内部大臣으로 農商工部次官 岡喜七郎이 同次官으로 轉任한 同時に 觀察使의 大更迭을 斷行하여 年老하고 排日的官僚를 陶汰하고 新進의 親日人士로서 그 大部分이 往年에 日本에 亡命했던 者들로서 代置하자 日本官憲과 協商하면서 施政의 改革이 斷行되었다.

특히 地方警察制度의 改革, 道廳의 移轉, 郡의 滅合, 府尹, 郡守會議의 開催, 郡守任用令의 改正 및 日本人官吏의 地方廳配置 등을 斷行함으로서 地方行政의 整備를 꾀한 것이다.

(2) 度支部大臣은 政府의 財務를 總轄하고 會計, 出納, 稟稅, 國債, 貨幣, 銀行, 其他 金融機關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고 公共組合의 貢務를 監督했으며 度支部에 內局으로서 司稅局, 司計局, 理財局과 外局으로서 會計検査局, 財務監督局, 印刷局, 關稅局, 建築所, 豪政局, 西北營林廠, 時時財源調查局, 航路標識管理所, 土地調查局 등을 두었다.

會計檢査局(1907年 12月 27日 勅令 第68號)은 官金의 收支와 官有物及 國債에 關한 會計를 監督하는 機構로서 會計檢査局長官은 主任官吏를 各官廳에 파견하여 收支會計에 對하여 事前検査(pre audit)를 하며 이를 監督할 수 있었고 또는 各官廳으로 하여금 檢查監督上必要할 薄書及 報告를 提出케 하며 一定한 期限附로主任官吏의 辨明書를 求할 수 있었다. 會計檢査局에 長官一人(勅任) 次長專任一人(勅任) 檢查官 專任二人(奏任) 主事 專任 10人(判任)의 1員을 두고 長官은 度支部大臣의 監督을 받았다.

財務監督局(1907년 12월 13일 勅令 第46號)은 度支部大臣의 管理에 屬하며 內國稅務及 地方에 關する 貢務를 管轄하였다. 從前에 獨立官廳이던 總稅務司廳이 1907年 12月 官制改革에서 度支部로 併合되고 地方徵稅機關을 改革하여 全國의 規模로 새로이 財務監督官署 및 財務署(23個所) 등을 增設하였다. 財務監督局은 漢城, 平壤, 大邱, 全州, 元山, 公州, 光州 등 7個所에 設置되어 또 財務監督局의 管轄區域內에 있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곳에 財務監督局支局을 둘 수 있었다. 局長은 度支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아 그 管轄內에 있어서 財務를 監督하며 財務署長을 指揮監督하고 財務署長의 處置가 法律命令에 違反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取消할 수 있었다.

印刷局(1907年 12月 13日 勅令 第43號)은 度支部大臣의 管理에 屬하는 官廳으로 印刷, 印紙類와 證券類의 製造 및 抄紙 등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여 局長(勅任官 1人)은 度支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았다.

關稅局(1907年 12月 13日 勅令 第44號)은 度支部大臣의 管理에 屬하여 關稅, 噸稅, 船稅, 其他 關諸收入, 關稅警察, 港務, 開港檢疫, 開港의 維持, 設備及 外國貿易 및 船舶, 海員, 航路標識 나아가서는 稅關及 航路標識管理所의 監督 등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여 關稅總長(勅任官 1人)은 度支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建築所(1908년 8월 13일 勅令 第59號)는 度支部大臣의 管理에 속하는 官業으로 建築工事

及 稅關工事。計劃, 設計, 敷地 및 海面의 測量 機械設備의 管理등에 關한 一切의 事務를 管掌하며 建築所長官(度支部次官 兼任)은 度支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는다. 그리고 仁川, 釜山, 元山, 濱南浦, 清津 등에도 建築所出張所를 擴張하여 두었다.<sup>(21)</sup>

夢政局(1911년 1월 22일 勅令 第3號)은 度支部大臣의 管理에 層하여 紅蔘의 耕作으로 부터 販賣에 이르는 紅蔘專賣의 管理와 그 取締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였다. 오늘날의 專賣官署의 前身<sup>c</sup>라 하겠다. 이보다도 오늘날의 專賣廳의 母體로서 臨時財源調查局(1908년 9월 改正)에서는 天日製鹽, 水產 등의 財源調查 및 涵養, 酒類의 財源調查 및 涵養, 그리고 煙草와 農產財源의 調查 및 涵養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였으며 平南乃谷面의 廣梁灣, 仁川 朱安面의 朱安, 그리고 釜山 東萊府의 龍湖 등에는 出張所를 두었다.<sup>(22)</sup>

西北營林廠은 度支部大臣과 農商工部大臣의 管理에 層하여 共同經營된 것으로 鴨綠江, 豆滿江沿岸에서 森林事務를 管掌하였다.

土地調查局(1910년 3월 10일 勅令 第23號)은 度支部大臣의 管理에 屬하여 土地의 調査及 測量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며 總裁는 度支部大臣이 이를 兼任하고 그 밑에 副總裁 1人(勅任官)을 두었으며 土地制度와 慣習의 調査, 調査事務의 計劃과 實行 및 監督, 諸臺帳及 帳簿의 調製, 測量의 計劃과 實行, 土地調查委員會 그리고 地圖의 製造 등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였다.

그밖에 航路標識의 設計와 工事施行 및 測量과 製圖 등을 管掌하는 航路標識管理所(1910年 3月 10日 勅令 第20號)와 建築所에 附屬하여 煉瓦及 建築材料의 製造를 管掌하는 煉瓦製造所(1907年 12月 29日 勅令 第69號), 그리고 財產의 調查整理, 不動產權利에 關한 異議審理, 帝室債務整理와 土地測量 등을 管掌하는 臨時財產整理局(1908年 7月 28日 勅令 第55號) 등의 附設이 있었다.<sup>(23)</sup>

그밖에 1907年 12月의 官制改革에서 金融機關을 整備하여 中央銀行인 韓國銀行을 創設하고 또한 既設의 官私銀行과 金融組合 등의 擴張을 圖謀했으며 또한 貿易發達을 위하여 開港場設備工事도 擴張하였다.

當時 初期에 韓國財政整理事業을 主管했던 財政顧問 木賀田種太郎의 歸國 이어서 새로히 荒井賢太郎가 度支部次官으로 任命되면서부터 本格的으로 財政整理가 促進되었다.

(3) 軍部官制로서 1905년에 勅令 第6號로 內局으로 軍務, 參謀 教育, 經理 등 4局을 設置하고 아울러 勅令 第7號로 將官會議所를 그리고 勅令 第26號로 軍器廠 나아가서는 1906년에 日本國의 駐韓軍司令部를 1907년에는 陸軍衛生院(勅令第48號)을 設置했으며 그밖에 陸軍

(21) 現行 韓國法典 前揭書 pp. 219~223.

(22) 上揭書 pp. 209~210, 277~280.

(23) 上揭書 第七章 pp. 209~288.

武官學校(1907年 勅令 第15號) 陸軍幼年學校, 陸軍法院과 憲兵 등의 官制를 公布實施하였다.

1907年 8月에 勅令 第14號로 官制改正을 보고 同年 9月에 將官會議所는 廢止되있는데 (勅令 第2號) 그 改正에 의하면 軍部大臣은 陸軍軍政及教育을 管理하고 軍人軍屬을 統督하며 內局으로서 軍務局과 經理局을 두어 統轄하였다. 그러나 1907年 8月에는 軍隊解散式을 訓練院에서 거행했고 1908年에는 日本 憲兵補助員으로 韓國人을 모집하는 등 日帝의 軍國主義 侵略이 深化되면서 1909年에는 결국 軍部가 廢止되고 官中에 親衛府를 두었다.<sup>(24)</sup>

(4) 法部는 1905年 勅令 第20號로 民事, 刑事, 二局을 設置하였으며 1907年 12月 勅令 第51號에 의하면 法部大臣은 裁判所及 檢查局을 監督하고 檢察事務를 指揮하여 民事, 刑事, 訴訟事件에 關한 事務와 其他 諸般의 司法行政 事務를 管理하도록 하였다. 또한 法部所管의 司法官培養者를 養成하는 法官養成所(1905年 勅令 第21, 26號 및 1907年 勅令 第53號)와 監獄(1907年 勅令 第52號) 등이 設置되어 그후 오래 동안 存續되었으나 法部는 1909年에 廢止되었다.<sup>(25)</sup>

(5) 學部(1907年 12月 18日 勅令 第54號)는 教育學藝에 關한 事務를 管理했으며 內局으로 學務局, 編輯局 그리고 所管機構로 法學校(1909年 10月 29日 勅令 第84號) 成均館(1908年 10月 31日 勅令 第76號), 直轄學校及 公立學校(1907年 12月 18日 勅令 第55號) 등이 있었다.

學務局에 關한 事項은 師範教育, 普通教育, 幼稚園教育, 實業教育, 專門教育과 各種學校에 關한 事項 그리고 教員檢定, 通俗教育과 教育會, 學校衛生, 學校建築, 外國留學生, 教育費補助등에 關한 事項을, 編輯局에 關한 事項은 圖書의 編輯譯譯出版, 給與 및 發賣와 教科用圖書檢定認可 및 曆書에 關한 事項 등을 管掌하였다.

法學校(1909年 10月 29日 勅令 第84號)는 學部大臣의 管理에 屬하여 法官 常任한 者를 養成하는 教育機關이었으며 成均館(1908年 10月 31日 勅令 第76號)은 文廟를 虞奉하여 經學 其他 畢科를 教習한 學校로서 館長 1人(勅任 又는 奏任) 教授專任 三人(奏任或은 判任) 直員 二人 등의 職員을 두었고 成均館에서는 每年一回 司業試選을 實施하였다. 成均館卒業生 또는 司業試選에 合格證書가 있는 者를 司業이라 稱했으며 이 司業은 判任官으로 待遇했다. 그리고 各郡 鄉校에는 文廟를 直守하고 校內庶務에 從事하는 判任官直員 一人을 當該郡儒林中에 關한 無報酬로 選任하였다.

學部直轄學校及 公立學校官制(1907年 12月 18日 勅令 第55號)에 의하면 普通學校를 除外한 直轄學校로서 前記한 成均館과 官立漢城師範學校, 官立漢城高等學校, 官立平壤商業學

(24) 現行大韓法規類纂 前揭書 第7章 pp. 126~170.

法規類編一第六類軍部 pp. 249~290.

(25) 前揭書 法規類編一第七類 pp. 291~302.

校(1909年), 官立漢城外國語學校, 官立仁川 實業學校(1909年), 官立漢城高等女學校(1908年) 등이 設置되었다. 이들 學校에는 校長(勅任又는 奏任)學監(奏任又는 判任), 教授(奏任又는 判任) 副教授(判任), 學員監(教授 副教授中에서 兼任) 書記(判任) 等의 職員을 두었으며 그 밖에 특히 師範學校에는 訓導(判任) 副訓導(判任)를 두고 幼稚園을 附屬하고 있는 高等女學校에는 保師를 두었다.

直轄學校는 學部大臣의 命을 받고 公立學校長은 觀察使 又는 府尹, 郡守의 命을 받아 學校를 管理하였다며 學校長은 學部 又는 其他의 官吏中에서 兼任시킬 수 있었다.

또한 師範學校學監은 附屬普通學校의 校務를, 高等女學校學監은 附屬幼稚園의 園務를 각 己管掌하였다.<sup>(26)</sup>

(6) 農商工部(1907年 12月 18日 勅令 第57號)는 農商工, 水產, 林野, 鎳山, 地質, 氣象及 水上運輸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였으며 內局으로서 農務局, 商工局, 山林局, 鎳務局 및 水產局 그리고 所管機關으로서 勸業模範場(光武11年 3月 26日 勅令 第17號), 平壤鎳業所(1907年 12月 29日 勅令 第69號), 農林學校(光武 10年 8月 30日 勅令 第39號) 園藝模範場(光武 10年 8月 13日 勅令 第37號), 工業傳習所(1908年 11月 13日 勅令 第80號), 輸出牛檢疫所(1909年 7月 12日 勅令 第65號), 觀測所(1908年 4月 4日 勅令 第18號), 林業事務所(1908年 3月 14日 勅令 第14號), 種苗場(1908年 3月 14日 勅令 第13號), 國有森林山野 및 處分 調查會(1908年 4月 8日 勅令 第25號) 등이 있었다.

農務局에서는 農業, 蟲產, 蕃菜, 獵獵, 國有未墾地 및 氣象에 關한 事項을, 商工局에서는 商業, 商事會社, 博覽會, 共進會, 陳列館, 工業, 工場, 度量衡, 商標, 意匠, 및 水上運輸에 關한 事項, 山林局에서는 林業, 國有林野에 關한 事項을, 鎳務局에서는 鎳業, 地質 및 鎳床의 調查에 關한 事項을, 그리고 水產局에서는 水產에 關한 事項을 각기 管掌하였다.

勤業模範場(1907年 3月 26日 勅令 第17號)은 農商工部大臣의 管理에 屬하여 產業의 發達改良을 以한 檢範調查及試驗物產의 調查 및 產業上 必要한 物料의 分析及 鑑定, 種子, 種苗, 蟲種, 種禽及種畜의 配付 및 產業上의 指導通信及 講話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였으며 必要한 地方에 勤業模範場支場 또는 出張所를 設置하였는데 1908年에는 平安南道平壤에 勤業模範場平壤出張所 慶尙北道 大邱에 勤業模範場 大邱出張所를 두었다. 이들 農場의 增加로 因하여 農事의 進步가 促求된 바 있었다.

平壤鎳業所(1907年 12月 29日 勅令 第67號)는 石炭採掘 煉炭製造 그리고 石炭及 煉炭販賣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였다.

農林學校(1906年 8月 30日 勅令 第39號)는 農林業에 必要한 教育을 施行하였고 職員으로서 校長一人(奏任) 教授 專任 五人(奏任) 司監一人(奏任 或은 判任) 教授補專任四人(判任)

(26) 現行韓國法典 全度支部大臣官房編纂 第四編 第八章 pp238~300.

書記 專任 三人(判任) 등을 두었다. 오늘의 서울大 農科大學의 母體이었다.

園藝模範場(1906年 8月 13日 勅令 第37號)은 園藝를 改良하는 模範을 施行하였으며 工業傳習所(1908年 11月 13日 勅令 第80號)는 工業에 관한 技術을 傳習하였고 輸出牛檢疫所(1909年 7月 12日)는 輸出牛의 檢疫事務를 管理하였으며 이를 慶尙南道 東萊府龍珠面牛巖洞에 設置하였다.

觀測所(1908年 4月 4日 勅令 第18號)는 氣象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였으며 仁川府仁川에 觀測所를 그리고 京城測候所, 平壤測候所, 龍岩浦測候所, 大邱測候所, 釜川測候所, 木浦測候所, 元山測候所 및 城津(咸北)測候所 등을 두었다.

林業事務所(1908年 3月 14日 勅令 第14號)는 國有森林山野의 造林事業及調查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였으며, 林業事務所의 名稱 位置 및 管轄區域은 다음과 같다.

林業事務所 名稱 位置及 管轄區域(1909년 4월 10일 農商工部告示 第21號)

名稱	位置	管轄區域
京城林業事務所	京畿道 漢城	京畿道內 漢江以北, 黃海道 江原道
水原林業事務所	京畿道 水原	京畿道內 漢江以南, 忠淸南道 忠淸北道
大邱林業事務所	慶尙北道 大邱	慶尙北道, 慶尙南道
木浦林業事務所	全羅南道 木浦	全羅南道, 全羅北道
鏡城林業事務所	咸鏡北道 鏡城	咸鏡北道, 咸鏡南道
平壤林業事務所	平安南道 平壤	平安南道, 平安北道

種苗場(1908年 3月 14日 勅令 第13號)은 種子, 種苗, 畜種, 種禽, 種豚 등의 配付, 農事의 短期講習及 巡回講話 및 農事의 實地指導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며 1908年 3月 現在 種苗場 位置 및 名稱은 다음과 같다.

位罝	名稱
慶尙南道 晉州	晉州種苗場
咸鏡南道 咸興	咸興種苗場
全羅南道 光州	光州種苗場
全羅北道 全州	全州種苗場
黃海道 海州	海州種苗場
平安北道 義州	義州種苗場
咸鏡北道 鏡城	鏡城種苗場
忠淸南道 公州	公州種苗場
江原道 春川	春川種苗場

國有 林山野處分審查會(1908年 4月 8日 勅令 第25號)는 (1) 國土의 保安上 또는 國有 森林山野의 經營上 國有로 保存할 必要가 있는 國有森林山野個所의 決定과 (2) 公益上 特別한

事由가 있을 경우에 國有保安林의 解除 그리고 (3) 國有山林山野의 隨意契約에 의한 賣却 및  
(4) 國有木材山野의 交換등에 關한 事項을 管掌하며 그 構成員는 會長一人(農商工部次官)과  
委員 9人중 1人은 農商工部勤任官 或은 奏任官中에서 또 3人은 内部勤任官 或은 奏任官中에  
서 그리고 나머지 3人은 度支部勤任官 或은 奏任官中에서 各已 充員되었다. <sup>(27)</sup>

이밖에도 森林法의 發布, 度量衡의 改良普及, 漁業法의 發布, 韓日 通信協定의 締結, 商品陳列館의 開設 등은 產業振興의 名目으로 斷行된 重要措置이었으며 또한 韓日兩國의 資本으로써 創立된 東洋拓殖株式會社는 植民的侵略의 基盤이 된 것이었다.

以上으로서 中央政府 및 各部所管官制에 관하여 論及하였다. 무릇 1906年에 外部가 廢止됨에 이어서 1909年에 法部와 軍部가 解體됨으로서 韓日合併當時의 中央行政編制는 크게 變革되어 內部, 學部, 農商工部 및 度支部의 四個部로 縮少되게 되었다. 이를 四個部의 内部構造를 보기로 다음 表와 같다. <sup>(28)</sup>

다음 内部行政管의 漢城府와 各道의 一般地方行政官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漢城府(1907年 12月 18日 勅令 第38號)의 府尹(一人勅任)는 内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고 各部 主務事項에 關해서는 各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으면서 法律命令을 執行하고 漢城府內의 行政事務를 管掌한다. 府尹은 管內行政事務에 關한 職權의 範圍內에서 府令을 發할 수 있고 府尹 밑에 事務官 專任二人(奏任) 主事專任 15人(判任) 技手 專任 15人(判任) 등의 職員을 둔다.

다음 地方官制(1907年 12月 18月 勅令 第40號)에 따라 13道에 觀察使一人(勅任), 書記官一人(奏任) 警視(奏任)(各道合計 37人)事務官 專任一人(奏任), 主事(判任)(各道合計 143人) 警部(判任)(各道合計 197人) 翻譯官補(判任)(各道合計72人)등을 두며 觀察使는 内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고 各部의 主務에 對하여는 各部大臣의 指揮監督을 받아 法律命令을 執行하고 管內行政事務를 管理한다.

觀察使는 管內行政事務에 關하여 職權範圍內에서 道令을 發할수 있으며 管下 府尹, 郡守, 警察署長及 警察分署長의 處分 又는 命令이 成規에 違反하여 公益을 害하거나 權限을 侵犯

(27) 上掲書 第9章 pp. 301~329.

(28) 隆熙 13 12月 28日字 勅令 第37號 內部官制.

隆熙 24 1月 25日定 内部分課規程

隆熙 13 12月 18日字 勅令 第39號 警視廳官制

陸軍 11月 15日 勅令 第41號 度支

隆熙二年一月廿七日字廣志部分課題

隆熙 2-1 1月 27日字 檢討部分條規程。  
隆熙 4-1 3月 15日字 勅令 第23號 土地調查局官制

降旨 11月 29日字 勅令 第68條 會計檢查員

降照 1941年12月29日字勅令第58號會計檢直局官制  
路照 1941年8月13日字勅令第59號建築所官制

隆熙二年八月十五日字勅第35號 建案別旨制  
隆熙四年三月十日字勅合第18號 關稅局官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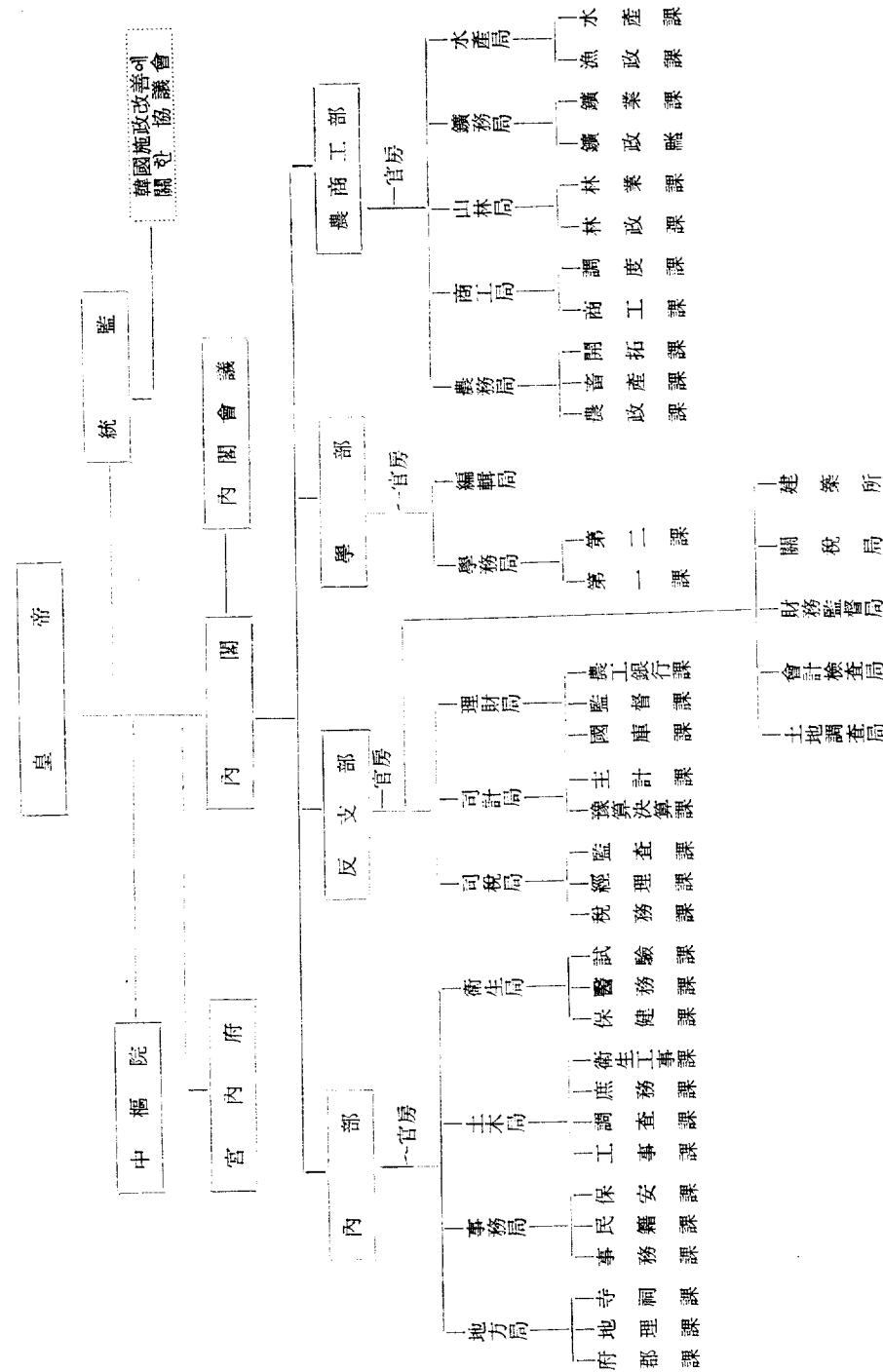
隆熙 4-3 3月 10日字 制帝 第18號 嘉慶同旨制  
隆熙 1-12 12月 18日字 勅令 篓46號 財務監督局官

隆熙丁巳十二月十八日子刻奉第46號財務監督局官制  
封金第54號閏都官制

勅令 第54號 學部官制  
封令 第52號 藝術工部

勅令 第57號 農商工部官制

韓日合併當時中央各部組織



했다고 認定한 경우에는 其處分 又는 命令을 取消하거나 停止할 수 있었다. 各道는 内務部及 警察部를 두고 内務部는 地方行政, 救恤及 慈善 享祭, 宗教 及 祠社寺, 土木, 地籍及土地收用, 教育學藝, 勸業 外國人 등에 關한 事項을, 警察部는 警察, 衛生, 民籍, 移民 등에 關한 事項을 行己 管掌하였다. 内務部長은 書記官으로 警察部長은 警視로 充員하였다.

그리고 各 府郡에는 各己 府尹一人(勅任 或은 奏任), 郡守一人(奏任) 및 主事(判任)를 두고 이들은 警察使의 指揮監督을 받어 法律命令을 執行하며 管內行政事務를 管掌했다.

또한 1908年 7月 28日 内部令 第4號로 改正된 警察署, 分署, 巡查 駐在所 名稱 位置及 管轄區域表。의 하면 漢城府에 中部, 東部, 南部, 銅峴, 西部, 龍山, 北部警察署(龍山警察署에는 漢城 麻浦, 西湖, 巡查 駐在所가 있음).

京畿道에 水原, 安城, 仁川, 江華, 開城, 漣川, 楊州, 麗州警察署, 忠清北道에 清州, 忠州, 提川, 水同 警察署.

忠清南道에 公州, 江景, 鴻山, 洪州, 瑞山, 大田, 天安警察署.

全羅北道에 全州, 南原, 錦山, 群山, 古阜警察署.

全羅南道에 光州, 羅州, 順天, 木浦, 長興, 海南, 濟州警察署.

慶尙南道에 晉州, 河東, 居昌, 馬山, 統營, 釜山, 密陽, 蔚山警察署.

慶尙北道에 大邱, 金泉, 尙州, 安東, 義城, 延州, 永川, 盈德, 荣川警察署.

江原道에 韋川, 金城, 鐵原, 江陵, 通川, 蔚珍, 原州, 平昌警察署.

咸鏡南道에 咸興, 北青, 惠山鎮, 甲山, 元山, 永興警察署.

咸鏡北道에 鏡城, 羅南, 會寧, 清津, 慶興, 城津警察署.

平安北道에 義州, 新義州, 龍岩浦(分署), 楚山, 定州, 宣川, 寧邊, 北鎮, 江界警察署.

平安南道에 平壤, 安州, 鎮南浦, 成川, 德川警察署.

黃海道에 每州, 戴寧, 松禾, 瑞興, 黃州警察署 등이 있었고 또한 이를 각地方警察署管轄 밑에 몇個地區에 각기 巡查駐在所가 配置되어 全國의in 規模로 治安機能을 擔當하였다.<sup>(29)</sup>

여기서 統監府時代에 있어서의 一般統治組織과 機能面에서 나타난 特徵의in 事項을 列舉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内閣體制가 크게 整備되었다.

甲午·乙未兩改革에 의한 内閣制度가 俄館播遷以後 舊體制로 復舊되고 國王의 權限이 크게 擴張되어 内閣의 機能自體가 國王에 의하여 많은 制約을 받았었으나(議政府로의 還稱, 國王의 無限君主權, 國王의 大元帥君臨等) 1904年的 韓日議定書 締結後의 議政府官制의 改正(1904年 3月 4日子 勅令 第1號)에 의하여 비록 議政府라는 名稱은 그대로 存續시키면서도 國王의 權限을 크게 縮小시켜 内閣의 地位를 向上시켰다. 그리고 同議政府는 1907年에

(29) 現行韓國法典 前揭書 第6章 pp. 157—198.

내閣으로 다니改稱되게 되고 내閣으로서의地位를 確固히 하였다. 이와같이 内閣體制를 具備하게 된 것은 첫째는 統治組織의近代化를 意味함과 同時に 둘째는 國王의 君主權의 衰退를 意味하는 것이었다.

1907年에 三內閣官制, 内閣所屬 職員官制及 内閣會議規程을 改正하여 從前의 「議政府」를 「内閣」으로 改稱하고 「議政府大臣」을 「内閣總理大臣」으로 改稱함과 同時に(光武 11年 6月 21日字 勅令 第42號) 大要 下記要旨의 内閣官制를 公布하여(光武 11年 6月 17日字 勅令 第1號) 内閣體制를 더욱 整備하였다.

- 1) 内閣은 國務大臣(内閣總理大臣及 行政各部大臣)으로 組織함. (第1條)
- 2) 法律命令은 内閣總理大臣及 關係大臣의 副署를 要함. (第6條)
- 3) 下記事項은 内閣會議를 經由하여야 함. (第7條)
  - a. 法律案 勅令案
  - b. 豐算案 決算案
  - c. 豐算外支出
  - d. 各部主管權限의 爭議
  - e. 文武勅任官의 任命進退
  - f. 叙品及叙勳
  - g. 大典及特赦
  - h. 其他各部主管事務로서 重要한 政策事項

둘째로 三法·行政·司法 三權의 權限分立이 爽ter오기 시작했다.

비록 近代的인 議會制度는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内閣制度가 整備되어 나감으로써 君主의 從來의 國政總攬者로서의 地位가 削奪되어 나가는 代身 内閣에 의하여 政策이 形成되어 나감으로써 政策의 形成機能이 概念上으로나마 執行機能과 區別되기 시작했다.勿論 1896年以後에 代議機構로서 強化되기 시작했던 中樞院이 統監期에 有名無實化해진 것은 代議制의 一面에서는 後退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裁判所가 構成되고 司法權이 어느 程度 獨立되어 國權의 分化過程이 促進된 것도 注目할 만하다.

셋째로 統治組織에 機能的 專門化가 나타나게 되었다.

各組織의 職權이 法令에 明定되고 各組織의 分化가 增加됨으로써 各organization相互間의 機能的 專門化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넷째로 行政에 關한 法治秩序가 維持되게 되었다.

비록 그 「法」은近代的인 意味에 있어서의 人民의 選出代表로서 構成된 議會에 의하여 制定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에 의해서 行政이 一定한 規制를 받게 됨으로써 行政의 無秩序를 防止하게 되고 官의恣意的인 裁量權行使를 크게 封鎖하게 되었다.

다섯째로 統治機構가 膨脹되었다.

이期間에 廢合된 機關도 많았지만 大體의으로 國家機能이 擴張됨으로써 여러 財政機構, 司法機關, 教育機關, 建設機關 등이 새로 設立되거나 擴設되게 되었다.

여섯째로 地方行政官署가 一般地方行政官署와 特別地方行政官署로 分化되어 前者は 内部大臣의 一段의 指揮監督을 받고 後자는 關係主務大臣의 指揮督監을 받게 되었으며 一般地方行政 중에서도 業務의 性格에 따라 名已 中央의 該當主務大臣의 業務遂行上 指揮를 받는 體系가 形成하기始作하였다.

일곱째로 内部에서는 地方官制의 改革을 重點的으로 斷行하여 從來, 徵稅, 司法, 警察의 諸權限을 함께 掌握하였던 郡守는 徵稅法의 改正, 新裁判所의 設置, 警察制度의 改正 등에 依하여 크게 그 權限을 縮少하고 純粹히 行政官으로서 行政에만 專擔케 함으로서 다시는 往往의 菁拔誅求의 弊端이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觀察使밑에 日本人 書記官 一名 및 日本人 警視, 修補, 主事若干名式을 配置함으로서 植民的統制를 強化하여갔다.

여덟째로 學部에서는 日帝의 干涉으로 植民化의 政治的社會化를 強行하였다. 즉 普通教育의 普及을 嘉勵하여 教師의 養成, 教科書의 編纂에 着手하고 實業學校令, 高等女學校令을 發布하여 實業教育와 女子教育의 發達을 圖謀했으며(1908年에는 私立學校令을 發布하여 私立學校의 非日運動을 嚴重히 取締하였고 마침내 宣教師가 設立한 各宗教學校에도 이를 適用하였다.

### 第三節 裁判所 構成

1907年 2月 23日 法律第8號로 公布되고 翌年 1月 1日부터 施行된 裁判所構成法에 의하면 裁判所는 區裁判所, 地方裁判所, 控訴院, 大審院 등의 4種이 있었으며 區裁判所는 判事が 單獨으로 裁判을 行하고 地方裁判所, 控訴院 及大審院은 一定數의 判事로 組織된 部에서 合議하여 裁判을 行하였다.

各裁判所別로 檢查局을 設置하여 檢사는 公益을 代表하여 刑事에 있어서는 公訴를 提起하고 判決의 執行을 監視하며 民事에 있어서는 必要로 認定하는 경우에 其意見을 陳述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警察官과 其他 行政官吏는 檢事의 要求에 따라 그 職務를 補助해야 했다. 또한 區裁判所에는 書記課를 두고 書記課는 裁判所及檢事局에 附屬시켰으며 書記는 判事 또는 檢事의 命令에 따라 往復, 會計, 訴訟, 記錄의 調製, 文書의 送達과 其他 庸務를 掌理하였다. 그리고 裁判所及檢事局의 行政事務와 檢察事務는 法部大臣의 監督에 屬했다. 따라서 當時의 裁判所는 行政府로부터 獨立된 것이 아니었고 裁判所와 檢事局의 機能도 分化되지 않았다.

區裁判所는 民事로 地方裁判所는 民事와 刑事로 各己 裁判權의 範圍가 定해져 있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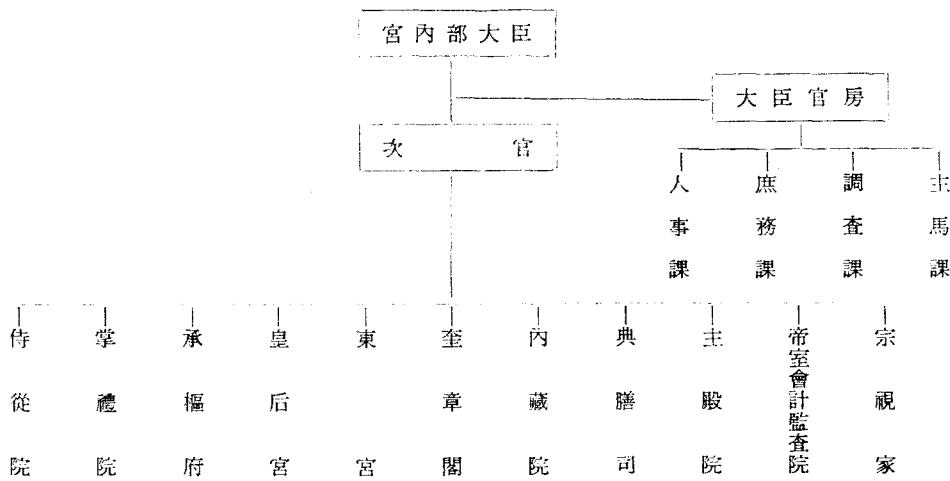
地方裁判所는 民事 및 刑事의 第二審으로 區裁判所의 裁判에 대한 控訴及抗告裁判을 하였다.

控訴院은 地方裁判所의 裁判에 對한 控訴及 抗告裁判을 擔當하며 大審院은 終審으로 地方裁判所나 控訴院의 第二審判決에 對한 上告及控訴院의 裁判에 對한 抗告裁判을 擔當했다. 大審院에 一 個或은 數個의 民事部及 刑事部를 두고 部는 5人의 判事로 組織하고 其一人을 裁判長으로 했다.<sup>(30)</sup>

#### 第四節 宮內組織

統監府時代에 있어서 가장 激甚한 變革을 거친 것은 宮內組織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 바  
参考로 甲午改革 以後에 統監府時代를 기쳐 韓日合併時까지의 同宮內組織의 變化系譜를 보  
면 다음 表과 같다. <sup>(31)</sup>

下記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統監府時代의 宮內組織은 많은 變遷을 겪었는데 가장 激甚한 變革을 거치 一旦 整備가 完了되었다고 할 수 있는 1907 年度의 宮內組織은 아래와 같이 圖式化할 수 있다. (1907 年의 改正宮內府官制)



(22) 沈其林编 259-267

(31) 內閣調査局、官報、開國 504 年度

內閣記錄局，官報，開皇  
皇朝新編。光武 8 年廢

皇朝新聞、光武 8年度  
内閣記録局 法規類編 初編 建陽 五年度

內閣記錄局，法規類編，初編 建陽 光武 2年

議政府總務局 官報 光武 3~10年

議政府總務司，官報，  
法推總編 下 官制門

李龍閣日記 國史編纂委員會版 高宗 15. 서울, 1968.

甲午改革 直 前	日 午 改 革	甲 午 改 革 後	韓日合併 時까지存 續된 것
[官 内 部]			
承政院	→府 宣 院	→秘書監(1895)→秘書院(1895)→秘書監(1905)→廢 止(1907)	
經筵廳	會 計 司	→會計院(1895)→經理院(1905)→內藏院(1907)	○
弘文館	→經 筵 廳	→經筵院(1895)→弘文館(1897)→廢 止(1907)	
藝文館			
奎章閣	→奎 章 閣	→奎章院(1895)→奎章閣(1896) 平式院(1902)→農商工部에 併合(1904)	○
承文院	→承 文 院	→廢 止(1895) 通信司(1896)→廢 止(1905)	
司鑾院	→司 鑾 院	→典膳司(1895)→御供院(1904)→典膳司(1907)	○
內醫院	→內 醫 院	→典醫司(1895)→太醫院(1896)→廢 止(1907)	
尚衣院	→尚 衣 院	→尚衣司(1895)→尚方司(1905)→廢 止(1907)	
掌樂院	→掌 樂 院	→廢 止(1895) 營繕司(1895)→廢 止(1897)	
	樂 廟 署	水輪課(1898)→水輪院(1902)→廢 止(1907)	
司僕寺	→司 僕 寺	→廢 止(1895) 綏民院(1902)→廢 止(1907) 秘 蕤(1902)→廢 止(1907)	
	馬 閣 司	→主殿司(1895)→主殿院(1905) 西北鐵道局(1900)→廢 止(1904)	
內需司	→內 需 司	→廢 止(1895) 濟用院(1895)→濟用司(1904)	
侍講院	→侍 講 院	→廢 止(1896)→廢 止(1907)	
	翊 衛 司	侍從院(1895)	○
	講 書 院	貴族司(1895)→敦寧院(1900)→廢 止(1907)	
	衛 從 司	鐵道院(1900)→廢 止(1905)	
	輔 養 聽	博文院(1903)→同年에 禮式院에 併合	
內命婦	→內 命 婦	→廢 止(1907) 帝室制度整理局(1904)→帝室財產整理局(1907)→臨時帝室 有及國有財產調查局(1908)→臨時財產整理局(1908)→廢 止(1908) 王族家(1895) 親王府(1900) 宗人學校(1899)	
[宗 伯 府]			
奉常寺	→奉 常 寺	→廢 止(1907)	
社稷署	→社 稷 署	→廢 止(1907)	
典牲署	→典 牲 署	王太子妃宮(1895)→皇太子妃宮(1897)→東 宮(1907)	○
	太 蔡 殿		○
	濟 源 殿		○
	長 祚 殿		○
	各殿墓陵園		○
尚瑞院	→尚 瑞 止		
	宗 正 府		
	義 賓 院	帝室會計監查院(1907)	○
	義 宁 院	承寧府(1907)	○
		修學院(1907)	○
		御苑事務局(1908)	○

新官制의 要點은 舊官制가 매우 複雜하여 많은 院司가 亂立했던 것을 慶合하여 官員을 陶汰하고 機構의 簡素化를 圖謀한 것이었다. 즉 從來의 25 院司를 大臣官房以下 12 麾으로 縮少하고 1907年末로부터 1908年末에 걸쳐 勅奏任以下 160名과 雜役人 3809名, 女官 252名宮中警察官(權任巡檢) 317名의 官員減員을 斷行하여 이를 退官者에게는 一切 退官賜金을 支給하였다.

또한 帝室財產을 整理하여 宮內府의 舊債를 상환하기 위하여 1907年 7月에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產調查局을 內閣에 設置하고 그 調查를 進行하는 동시에 宮內府에 財產整理局을 設置하여 其整理를 擔當케 했으며 王室財產과 國家財產을 制度의 으로 分離시키는 計劃으로서 1907年 11月에는 舊經理院所官 驛屯土의 收租及舊一司七宮의 田畠, 園林 其他를 度支部에 移管하고 同年 12月에는 宮內府의 收入에 屬했던 莓稅及 諸種의 雜稅를 國庫의 收入으로 移管하고 나이가서는 帝室有土地建物을 貸下하고 1908年 6月에는 宮內部所管及 慶善宮(嚴妣) 所屬의 不動產全部 및 宮內府의 收入에 屬한 諸稅를 모두 國有로 移管시키는 同時에 國庫로 부터는 每年 皇室費 150萬圓을 支出하고 財產整理에 의하여 獲得된 바의 收入 188萬圓을 臨時費로 供用한 후 帝室債務는 度支部가 대신해서 整理를 맡아 1909年 5月에 그 負債全部를 상환함으로서 帝室財產整理를 一段落지었다.

여기서 宮內部各機關의 主要職能職制를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 宮內部大臣은 帝室에 關한 一切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官吏를 統督했으며 裁可를 얻어 帝室諸般의 法規를 制定할 수 있었고 宮中儀式 祭典 動駕動輿及 其他事務에 關한 命令을 告示할 수 있음을 물론하고 主務事務에 關하여 警視總監及 地方長官에게 命令할 수 있었다. 또한 大臣은 皇族과 文武官의 叙勳을 管掌하였다.

(2) 大臣官房은 人事, 庶務, 調査及 主馬等 4課로 編制되어 宮內部大臣의 職務를 分掌했다.

(3) 侍衛院은 常侍奉仕하고 秘書及 御服 御物을 管守하고 診候, 醫藥及 衛生事務를 掌理했으며 그 職制는

卿 1人(親任)~院務總理, 御璽御寶尙藏, 職員統督

副卿 1人(勅任)~卿輔佐, 院務掌理, 卿有故時의 其職務署理

其他~侍從(勅任 或 奏任) 12人(2人은 勅任), 侍從補(奏任待遇) 9人, 典醫長(勅任 1人) 典醫(奏任) 5人, 製藥師(奏任) 1人, 醫員 2人 및 主事(判任) 6人 등이 있었다.

(4) 掌豐院은 祭儀典禮及 樂事를 管掌했으며 그 職制는 卿 1人(勅任)~院務總理, 職員監督理事(勅任或奏任)~儀式典禮精查及 庶務管掌

其他~ 豐式官(奏任) 10人, 掌典官 5人 主事(判任) 16人, 國樂師長(奏任) 1人, 國樂師(判任) 2人, 樂師長(奏任) 1人, 樂師(判任) 2人, 典祀長(勅任 或 奏任) 1人, 典祀(勅任)

或 奏任) 30 人 以內 및 典祀補(判任) 25 人 등이었다.

(5) 承寧府는 御供, 御服 其他 御需物品과 所管會計를 管掌했으며 그 職制는 捻管 1人 (親任)~府府總理, 附屬女官監督副撫管 1人(勅任)~撫管輔佐, 府務掌理, 撫管有故時 其職務署理.

其他~侍衛長(勅任) 1人, 侍從(奏任) 7人(1人은 勅任), 理事(奏任) 1人, 典醫(奏任) 2人, 掌膳(奏任) 1人 및 主事(判任) 6人.

(6) 皇后宮은 宮事와 内廷에 關한 事務를 管掌했으며, 그 職制로서 大夫(勅任) 1人 大夫補(奏任) 1人 및 主事(判任) 2人

(7) 東宮은 宮事管理 御供 御服 御需物品 及 主管에 關한 會計를 擔當했으며 이 職制는 大夫(勅任) 1人, 大夫補(奏任) 1人, 侍從(奏任) 4人, 侍講(奏任) 2人 및 主事(判任) 2人

(8) 奎章閣은 帝室典籍及文翰記錄保管과 列聖 御製 御章御真及 璞源譜略 追譜代撰과 宗室에 關한 事務를 管掌했으며 그 職制는 大提學(勅任) 1人, 提學(勅任) 10人 以內, 副提學(勅任或 奏任) 10人 以內, 宜閣(奏任) 10人 以內, 試候官(勅任)(閣務의 顧問을 應함) 10人, 卿(勅任) 1人, 記注官(勅任 或 奏任) 2人, 典製官(勅任 或 奏任) 2人 및 主事(判任) 4人 등이었다.

(9) 內藏院~帝室寶物·器具의 保管, 帝室經費及 財產會計管理, 御服御物과 其他 需用物品·禮服購貿修膳運搬及土木營膳에 關한 事務를 管掌했으며 그 職制는 卿(勅任) 1人 副卿(勅任) 1人 理事(奏任) 3人 技師(勅任 또는 奏任) 4人 등이었다.

(10) 典膳司는 供御, 饗宴, 其他 器具에 關한 事務와 主管會計事務를 管掌했으며 司長(勅任 或 奏任) 1人, 掌膳(奏任) 1人 및 主事(判任) 4人 등의 職員을 두었다.

(11) 主殿院은 宮殿, 離宮, 御苑及 銷鑄 鑄掃館設立並電機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며 그 職制는 卿(勅任) 1人, 理事(奏任) 1人, 主事(判任) 7人, 電務技師(奏任) 1人 및 電務技手(判任) 6人 등이다.

(12) 帝室會計監查院은 帝室財產에 關한 計算의 檢查確定及 帝室會計監查를 管掌하며 그 職制는 卿(勅任) 1人, 理事(奏任, 監事官 兼任) 1人, 監查官(奏任) 2人 및 主事(判任) 6人 등이다.

(13) 宗親家는 輔翼及 家務總理과 家職監督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며 그 職制로는 總辨(勅任)~親王家 各 1人, 賛尉(奏任)~親王家及 皇族家에 各 1人 등이 있었다.

上述한 바와 같이 宮內部編制는 從前보다 大幅 整備 簡素化되었다.<sup>(32)</sup>

무릇 統監府時代를 통하여 大韓帝國統治體制는 그 構造面에서나 機能面에서 많은 變革을 치루었다. 그것이 日帝의 植民地化를 準備하기 위하여 外的強制에 의한 것이지만 宮內部

(32) 現行韓國法典 前揭書 第四編 第一章 pp. 55~67.

編制를 除外하고 一般統治組織과 裁判構成등에 있어서는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이 構造上의  
分化와 機能上의 專門化가 促進되어 近代化를 指向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大體로 오늘날의  
우리나라 政治行政體制의 基本的母體가 되어 發展되고 있는 點이 注目된다.